
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②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─6575/전송(02)790─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/ 보험정책팀장 이성민(6571)/ 팀원 심준기(6575)/E─mail:batitu@nate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 - 10808호

시행일자 2018. 12. 5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 의사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 관련 주의사항 재안내

-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관련근거: 우리협회. 제821-6814호(2018.09.03.)
- 3. 위 호와 관련, 우리협회는 최근 논란이 있었던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에 대하여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사항과 복지부의 비급여 인정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는 바,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.
- 4. 이에 귀 회 소속 회원분들이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해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, 귀 회 소속 회원분들이 이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재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가. 식약처 허가사항과 복지부 인정기준 비교표

식약처 허가사항	복지부 비급여 인정기준
만성통증, 난치성 통증, 수술 후 및 외상	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
후 급성통증, 급성통증, 치료 후 통증,	Scrambler Therapy
신경병증통증, 근육통 등의 통증완화	주 :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
[2012.03.13.]	만성 통증,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
	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.
	[2014.05.29.]

- ※ 식약처 허가 이후 신의료기술 평가시 급성통증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바, 건강 보험 비급여 등재시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통증, 암성 통증, 난치성 통 증만 인정됨
- 나. 주의사항 : 복지부 인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